#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49

발의연월일: 2020. 8. 19.

발 의 자:서영석・인재근・문진석

김경협 · 김경만 · 박홍근

이정문・강선우・박영순

설 훈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, 성장과 발달,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2019년 기준 39만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48,250명에 불과하고, 학교 밖 청소년 중 다른 경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잠재적 지원 대상자 수 대비 실제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움.

이에 학교 박 청소년 정보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단체장이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

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,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 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
- 6.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(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)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「교육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청소년이 「교육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연 행	개 성 안
제15조(지원센터에의 연계) ① ~	제15조(지원센터에의 연계) ① ~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	③
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	
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	
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	
호의 개인정보(이하"개인정보"	
라 한다)의 수집ㆍ이용 목적,	
수집 항목, 보유·이용 기간 및	
파기 방법(이하 "개인정보동의	
고지사항"이라 한다)을 고지하	
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	
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	
수 있다. 다만, 해당 청소년의	
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	
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	
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	
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	
공할 수 있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
<u>3.·4.</u> (생 략)	<u>4.·5.</u>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

	인 연락처(전화번호 · 전자우
	<u>편주소 등)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
	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
	「교육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
	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
	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
	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
	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
	제공할 수 있다.
<신 설>	
	제공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해
	당 청소년이 「교육기본법」
	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
	대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
	1년 이내에 제공받은 개인정보
	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④ (생 략)	<u>를 되기하여야 한다.</u> 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	<u> </u>